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
바랍니다.

2014년 06월 2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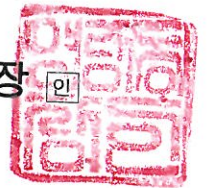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이**	이** 1959-05-06	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하 승아 문의전화 : 033-631-1401)

2014년 06월 11일

영랑동장 인



최 고 대 상 자 명 부

행정기관 영랑동

출력일자 : 2014년 06월 11일

페이지 : 1

일련번호	성명 주민등록번호	신고기한 최고내용	주소
1	이성인 590506-1*****	2014-06-10 무단전출	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13, (4/3)102동 402호 (영랑동, 동현아파트)